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정원도시국

총 4건 건의

목 록

| 연 번 | 건의제목 | 건의부서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·공유지 실효 제외 | 공원조성과 |
| 2 | 도시공원 내 국·공유지 무상사용 | 공원조성과 |
| 3 |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| 공원조성과 |
| 4 | 가축전염병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살처분 제도 개선 | 동물보호과 |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-|---------|
| <p>1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·공유지 실효 제외 (공원조성과, '24.6.27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·공유지는 '30.7.1. 이후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(1회 연장 가능) 예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은 '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'는 것임, 사적이용 대상이 아닌 국·공유지는 실효제외가 타당 ○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·공유지는 사적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실효를 유예(10년 유예, 추가 10년간 연장 가능)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국·공유지를 보상(재정부담)토록 한 현행 법률은 불합리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·공유지의 경우에는 실효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(도시공원 결정의 실효) | (국토교통부) |
| <p>2. 도시공원 내 국·공유지 무상사용 (공원조성과, '24.6.27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('11.4.1.)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유지 사용 시에도 최장 1년만 사용료 면제가 가능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자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가 비영리 공익 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료 | (국토교통부)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|----------------|
| | <p>면제*가 가능하므로 국·공유재산 간 형평성 문제 발생</p> <p>* 근거: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향후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사업추진 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○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은 국내·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기는 개방된 형태의 여가 및 휴게 공간이며, 지자체가 점유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료(점용료) 면제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(비용보조) | |
| <p>3.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(공원조성과, '24.6.27.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행위허가를 득한 후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위허가의 세부기준(시행령 별표3) · 높이는 최대 12m, 3층 이하로 제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, 공작물 높이가 최대 12m로 제한되어 공공용시설, 공익시설 설치 시 제약사항이 큼 ※높이 12m 초과인 송전선로(송전탑) 등 공익시설과 산불무인 감시CCTV, 산불소화시설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제약 | <p>(국토교통부)</p>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-|-----------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위허가 세부기준인 높이 12m 제한규정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m 초과하여 건축물, 공작물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행 후 설치 가능 또는 건축물, 공작물 12m 높이 제한 일괄 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 | |
| 4. 가축전염병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살처분 제도개선 (동물보호과, '23.9.19(1차), '24.7.5.(2차))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개,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가축전염병에 감염되면 치료 없이 24시간 이내 전부 '살처분'하도록 하고 있음 - 대상질병(제1,2종 가축전염병) : 고병원성 AI·브루셀라·결핵·광견병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성을 우선하여 밀집 사육하는 소, 돼지, 닭 등 가축을 대상으로 마련된 살처분 정책을 치료 가능성이 있고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려동물에서 가축 질병 발생 시 전문가가 위험도 평가하여 안락사 외 격리·치료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- (신설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국립 가축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격리·치료를 명할 수 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| (농림축산식품부) |